

대전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115805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나11286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115805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윤현진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주식회사

4. 주식회사 D

5.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남보

변론 종결2020. 4. 9.

판결 선고2020. 5. 7.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500,911원 및 그 중 305,189,177원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5. 2.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2018. 12.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1. 2. 접수 제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4. 체결된 매매계약을 330,582,5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330,582,5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내지 3항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2018. 10.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11. 1. 접수 제299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7. 9.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최초 1회 이후에는 생략한다)과 신용보증원금 3억 원, 신용보증기간 2017. 9. 29.부터 2020. 9.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의 대표자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기타 부대비용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7. 9. 29. F은행 충북혁신도시지점에 보증금액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이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 A이 2018. 12. 30.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4. 15. F은행에 305,189,1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대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피고 A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1,311,734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 소정의 연체이자율은 대위변제일인 2019. 4. 15.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18. 10. 31. 피고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11. 1. 접수 제29916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414,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8. 12. 26.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1. 2. 접수 제14호로 채권최고액 16,516,024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은 2018. 9. 4.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6억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E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10. 19. 접수 제285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마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는데, 피고 A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피고 D에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D 피고 D는 2014년경부터 피고 A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 A은 피고 D와의 거래가 중단되면 제품 운송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운송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 D의 운송료 미수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재정 상태 등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2.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9. 4. 15.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하에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올라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D는 2017년 이전부터 피고 A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의 제품을 운반하여 주고 운송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 A의 피고 D에 대한 2017년 운송료 미수금은 20,174,000원에 달하였고, 2018년에는 5월분 이후로는 운송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D가 지속적으로 운송료 지급을 독촉하다가 운송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밝히자 피고 A은 피고 D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2018. 11. 1.까지 피고 D의 미수금은 29,161,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8,414,000원인 사실, 피고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2018. 11.부터 2019. 1.까지도 계속하여 피고 A의 제품을 운송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A은 담보를 제공해서라도 피고 D와의 운송계약 해지를 피하고 차질 없이 제품 운송을 하여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회사의 갱생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A의 피고 D에 대한 기존 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비추어볼 때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운송 용역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피고 D의 미수금 내역, 근저당권의 설정 시기,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의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B에 대한 보증채권이 있는데,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E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채무자인 피고 A이나 피고 B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원고의 보증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E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B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2.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2019. 4. 15.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 및 피고 B에 대한 보증채권이 성립되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내지 15, 21, 23,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 및 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 및 보증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 E이 내세우는 있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판결은 처분행위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뒤에 주채무자의 이자 연체가 시작되었고 처분행위 이후에 취소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별도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기도 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외에 충북 음성군 G, H, I, J, K 토지 및 충북 음성군 L 지상 건물 M동 내지 N동이 있었고 그 시가는

2,732,502,960원이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F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3억 원, 피고 D에 대한 채무 23,980,000원(2018. 8.까지의 미수금), O은행에 대한 채무 1,811,064,182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3억 원, P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47,624,120원, Q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4,367,652원, R캐피탈에 대한 채무 34,152,909원, S 등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127,639,933원, F은행에 대한 채무 5,400만 원, T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343,920,315원(= 316,000,000원 + 27,920,315원) 합계 3,056,749,111원(= 3억 원 + 23,980,000원 + 1,811,064,182원 + 3억 원 + 47,624,120원 + 14,367,652원 + 34,152,909원 + 127,639,933원 + 5,400만 원 + 343,920,315원)이 있어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② 피고 A은 2018. 10. 1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8. 9. 고지분 이후의 건강보험료 등과 법정기한이 2018. 10. 25.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 A이 위 건강보험료 및 세금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세금, 건강보험료, 임금, 퇴직금 등을 체납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이미 매우 악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9. 4.부터 불과 3개월여 지난 2018. 12. 13.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P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8. 12. 30.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 3부동산 및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가 있었고 그 시가 합계가 1,779,354,685원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9 내지 25,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149,058,818원으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원고	306,500,911	
피고 E	150,000,000	대여금 채무
주식회사 U	145,000,000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원고	306,500,911	
V 주식회사	476,000,000	서울 송파구 아파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주식회사 W	583,000,000	서울 송파구 아파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소기업은행	300,000,000	
X 주식회사	29,098,180	
Y(Z회사)	15,000,000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 E이 인수한 채무
AA병원	40,000,000	AB의 진료비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주식회사 AC	17,117,863	
F은행	54,000,000	
20,000,000		
합계	13,341,8642,149,058,818	

나) 원고는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채무 1억 5,000만 원 외에 물품대금 채무 107,988,860원도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물품대금채무가 피고 B이 부담하는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E은,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306,500,911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 B의 보증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무 역시 피고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E은, F은행에 대한 채무는 대손상각 등으로 인하여 현재 대출잔액이 0원이 되었으므로 사해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이 이와 관련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은 처분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였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 자력을 회복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된다는 취지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변제 등의 사정으로 소멸한 개개의 채무가 소극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F은행에 대한 채무가 0원으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자력을 회복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3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도하고 이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무자력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3) 피고 E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8호증, 을마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 E은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로, 피고 B과는 외사촌 관계이다. AD과 피고 A 사이에는 2017년경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관계가 있어 왔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6억 원인데, 이는 2018. 9. 4.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인 708,275,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③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 E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AD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07,988,860원과 피고 E의 AD에 대한 가수금채권 중 대등액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위 107,988,86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피고 E이 임차인 Y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1,500만 원을 승계하고, T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E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8. 11. 9. T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347,282,046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는 피고 E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자금을 출연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매대금 중 107,988,86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당초의 물품대금채무가 피고 B의 개인 채무가 아닌 피고 A의 채무였다면, 피고 E이 AD으로부터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E이 피고 B 개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고 E이 상계 또는 채무 승계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금액의 합계는 620,270,906원(= 1억 5,000만 원 + 107,988,860원 + 1,500만 원 + 347,282,046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6억과 상이한데, 피고 E은 위와 같이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이 사건 제3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4억 5,500만 원으로 하는 T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E이 T은행이 347,282,046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8. 2.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는 721,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은 374,017,954원(= 721,300,000원 - 347,282,046원)이 된다. 한편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0. 4. 9.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306,500,911원 및 그 중 원금 305,189,177원에 대한 2019. 4. 15.부터 2020. 4. 9.까지의 지연손해금 24,081,594원(= 305,189,177원 × 8% × 361/366, 원 미만 버림)의 합계 330,582,505원(=306,500,911원 + 24,081,594원)이다. 따라서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인 330,582,505원이 된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330,582,5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30,582,5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A, B, C,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민혜

별지